

연금저축제도 주요내용

I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내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요건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 연간 4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 중도해지,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연금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13.3.1. 이후 가입한 경우 만 55세부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가입 5년 이상 경과 및 만 55세 이상되는 시점이 연금수령 1년차 해마다 연차는 올라가게 됨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인출(연금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 제한없음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세 포함)
보수·수수료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 계약자 요청에 따라 타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II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Ⅲ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 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 (3.3% ~ 5.5%, 지방세 포함)

1)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단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限)

※ 부득이한 인출사유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등이 부과되므로,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좌이체(이동)을 함으로써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2) 年 400만원을 초과납입하는 불입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부과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3)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확정형 연금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주1)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주2) 연간 연금소득금액(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함.

주3)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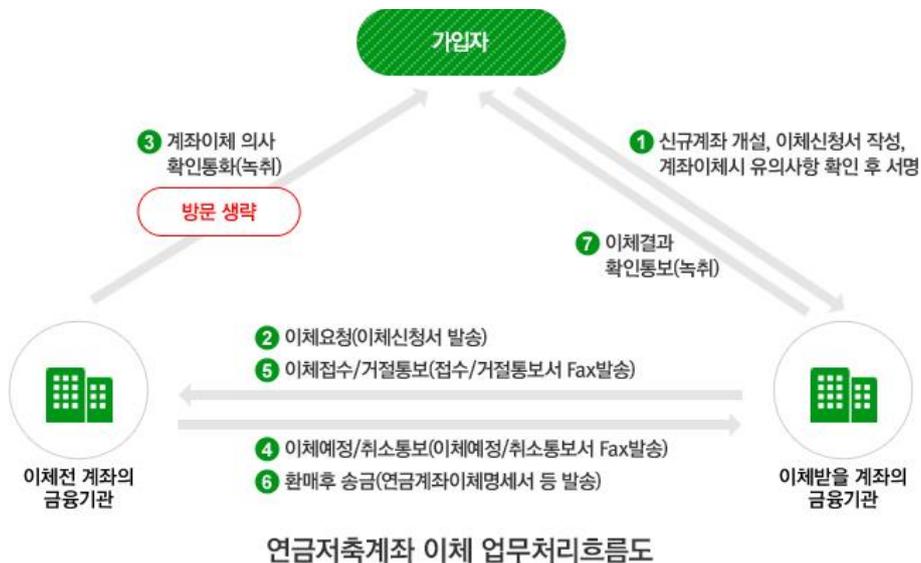
연금상품은 장기상품으로 계약기간 동안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정성, 운용수익률 수준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제상 불이익(중도인출로 보지 않음)없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계좌이체(계약이전) 대상 상품

구분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판매기간	'94.6 ~ '00.12	'01.1 ~ '13.2	'13.3 ~ 현재
소득(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소득공제)	연간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3.2% (세액공제)	
연금개시기간	적립 후 10년 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 후 10년 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5년 이상 분할수령	5년이상 분할수령	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최소 10년)
계좌이체 가능여부	舊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가능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능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주1)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인 경우,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어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
단, 보험상품 상품명에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좌이체가 가능
- 주2) 舊개인연금저축과 연금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한도,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각각 달라 상호간 이전 불가

2) 계좌이체 간소화 절차



· **신청일 : D일**

- 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가입자의 도장(서명거래인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
- 이체(이동)받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상품 신규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 작성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
- 이체전 금융기관으로 이체요청(이체신청서 발송)

· **금융기관간 처리단계 : D+1 영업일**

-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의사 확인 통화(녹취) 또는 이체하는 금융기관 방문
-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예정 정보 통보
- 이체전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접수 또는 거절 통보

· **확인단계 : 신청일로부터 4~5 영업일 이후**

- 이체 받을 금융회사로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
- 이체 받은 금융회사에서 이체결과 확인 통보(녹취)

※ **계좌이체(이동)의 제한**

- ① 연금수령 중인 계좌
- ②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이동)
- ③ 13.3.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13.3.1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체(이동)
- ④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계좌
- ⑤ 계좌 내 일부 금액의 이체(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이체만 가능)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자금의 일부 이체는 불가

3)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신탁(펀드)로 이동 시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이동)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위험보장 (ex. 사망보험금 등)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음
-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으므로,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은 받을 수 없음